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6호 2019. 11. 20.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240호 정선읍 신도로망(아라리교) 구축사업 기본계획 고시...2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1184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사업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4
- 정선군 공고 제2019-1197호 공시송달 공고.....6
- 정선군 공고 제2019-120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7
- 정선군 공고 제2019-120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2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240호

## 정선읍 신도로망(아라리교) 구축사업 기본계획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선읍 신도로망 (아라리교) 구축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정선읍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주요 행정업무기관 입지지역 및 정선5일장 일원과 전통 문화 체육의 중심지인 종합운동장 일원의 연결을 통해,
- 출퇴근 및 각종 행사 시 정선제2교 일원으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으로 정체를 해소 하여 도로이용자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 종합운동장 주변의 도시화 확대 등 변화되는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한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

### 2. 공사개요(내용)

- 공 사 명 : 정선읍 신도로망(아라리교) 구축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61-1번지 ~ 애산리 539-4번지 일원
- 공사개요 : L=689m, B=15.0m(2차로), (교량개설 L=479m, B=16m)
- 공사기간 : 2022 ~ 2025
- 총사업비 : 495억원(공사비 408억원, 보상비 등 87억원)

### 3.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 시    행    자 : 정선군수
- 공사수행계획 :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 4.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495억원(공사비 408억원, 보상비 등 87억원)
- 재원조달계획 : 군비 495억원

## 5. 연차별 투자 및 공사시행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 고
사 업 비	495	1	40	140	140	174	
시행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상 및 공사시행	공사시행	공사시행	

## 6. 시설물유지관리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립

## 7. 환경보전계획 : 해당없음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1184호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사업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

1. 정선군 고시 제2016-25호(2016. 4. 15)로 결정 고시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16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 조성사업
- 명 칭 : 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단위 : m<sup>2</sup>)

시설명	도 시 계 획 결 정		실 시 계 획 인 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기시행	금회시행	향후계획	
주차장	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	A=1,302m <sup>2</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1,191m<sup>2</sup></li> <li>■ 변경 910m<sup>2</sup> (감)281m<sup>2</sup></li> </ul>	-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2019. 11. 15 ~ 2019. 11. 29)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토지 소2-21호선

(단위 : m<sup>2</sup>)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2,740	910					
1	사북리	317-195	대	91	79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사북리	317-196	대	233	190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사북리	317-197	대	130	89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사북리	317-169	대	272	243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사북리	317-178	대	287	286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사북리	317-47	전	14	7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사북리	317-26	대	1,624	1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사북리	317-200	도	89	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지장물 조서

(단위 : m<sup>2</sup>)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사북리	317-178	가옥	스레트 및 벽돌	m <sup>2</sup>	92.00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사북리	317-196	창고	스레트 및 벽돌	m <sup>2</sup>	20.00	미국 뉴저지주	김*승	-	-	-
3	사북리	317-196	창고	스레트 및 벽돌	m <sup>2</sup>	5.00	미국 뉴저지주	김*승	-	-	-

정선군 공고 제2019-1197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됨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부과금 및 가산금 부과통지)를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체납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2.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업체명)	주 소	통지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신○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45-11, 101동 1**호	19.11.1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사랑채 앞 일대	※ 참조	206,000원	폐문부재 등

※ 위반내용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3. 공고기간 : 2019. 11. 12. ~ 2019. 12. 02. (21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부과금 및 가산금 부과) 통지하오니 2019년 12월 02일까지 정선군청 환경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과태료 부과 지속적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최고 60개월까지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033-560-2359, fax 033-560-2589)

정선군 공고 제2019-120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안 제1조~제3조)
- 나.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4조)
- 다. 상위법령 위반 조문에 대한 일괄 정비(안 제5조 ~ 제15조)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실)
  - 전 화 : 033-560-2228
  - 팩 스 : 033-560-2592
  - 이 메 일 : luissong82@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1장 한자어 정비에 따른 개정

제1조(「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리할”을 “회계처리 할”로 한다.

제2조(「정선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개정) 정선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3조(「정선군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 정선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계리상황의 보고)”를“(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한다.

## 제2장 호주제 정비에 따른 개정

제4조(「정선군 향토민상조례」의 개정)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한다.

## 제3장 과태료 정비에 따른 개정

제5조(「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전통지 등)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하기 전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로 한다.

제7조(「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1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8조(「정선군 상수도 원인가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상수도 원인가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4장 상위법령 위반 정비에 따른 개정

제9조(「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 체 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0조(「정선군물품관리조례」의 개정)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11조(「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를 “산림재해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로 한다.

제14조(「정선군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정선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3. [별표 4] 점용료의 감면기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u>계리</u> 하여야 한다.	제20조(계리의 원칙) ①----- ----- ----- <u>회계처리</u> -----.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u>계리</u>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②----- --- <u>회계처리</u> 할 ----- -----.

제2조(「정선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의 계상)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u>계리</u> 한다.	제5조(예산의 계상) ①----- ----- ----- <u>회계처리</u> <u>한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선군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출자) ① (생략)</p> <p>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계리한다.</u></p> <p>③·④ (생략)</p> <p>제19조(<u>계리상황의 보고</u>)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u>계리상황</u>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12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회계처리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u>회계처리상황의 보고</u>) ----- ----- ----- <u>회계처리상황</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제4조(「정선군 향토민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상대상) 향토민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u>본적이</u>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이상 활동한 자로서</p>	<p>제3조(수상대상) ----- ----- ----- <u>등록기준지가</u> ----- ----- -----</p>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타에 귀감이 되는 자로 하며, 공적기간은 시상기준일 현재 3 년이내의 공적으로 한다.	----- ----- -----
---------------------------------------------------------------------------	-------------------------

제5조(「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제19조(의견청취 등) 군수는 과태</u> <u>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u> <u>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u> <u>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u> <u>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u> <u>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u> <u>여야 한다.</u>	<u>제19조(사전통지 등) 군수는 제18</u> <u>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u> <u>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하</u> <u>기 전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u> <u>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u> <u>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u> <u>의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청</u> <u>취를 실시하여야 한다.</u>

제6조(「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 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 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② (생   략)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 차) 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 조의4-----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u>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21조의2 (생 략)</u></p> <p><u>제22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u></p> <p><u>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u></p> <p><u>제24조 (생 략)</u></p> <p><u>제25조 (생 략)</u></p>	<p><u>&lt;삭 제&gt;</u></p> <p><u>제21조 (현행 제21조의2와 같음)</u></p> <p><u>제22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u></p> <p><u>&lt;삭 제&gt;</u></p> <p><u>제23조 (현행 제24조와 같음)</u></p> <p><u>제24조 (현행 제25조와 같음)</u></p>

제8조(「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u>제15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u></p>	<p><u>&lt;삭 제&gt;</u></p>

사실을 은폐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된 수도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구성 등) ①·② (생략)</p> <p>③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u>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u></p>	<p>제17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p> <p>-----</p> <p>-----</p> <p>-----</p> <p>----- <u>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u>여 전 체 위원 의 3 분 의 1 이 상 이</u> <u>되 도 록 노 력 하 여 야 한 다.</u></p> <p>④ ~ ⑦ (생 략)</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	-----------------------

제10조(「정선군물품관리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p> <p><u>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u> <u>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u> <u>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u> <u>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u> <u>물품당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u> <u>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u> <u>의 규정 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u> <u>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u> <u>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u> <u>여야 한다.</u></p> <p>⑤ ~ ⑧ (생 략)</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u> <u>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u> <u>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u> <u>로 한다.</u></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제11조(「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준용규정) ① (생 략)</p> <p><u>② 용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u> <u>채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u> <u>의 예에 의해 채납처분 을 할 수</u></p>	<p>제18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 음)</p> <p><u>&lt;삭 제&gt;</u></p>

있다.

제12조(「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th> </tr> <tr> <td rowspan="3" style="width:5%; text-align: center;">① 신청자 인적사항</td> <td style="width:15%;">주 소</td> <td colspan="3"></td> </tr> <tr> <td>등록기준지</td> <td colspan="3"></td> </tr> <tr> <td>성 명</td> <td style="width:15%;">생년월일</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연 락 처</td> <td>자 택: 휴대폰:</td> <td style="width:15%;">직업</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② 재산규모</td> <td>건 물</td> <td>답</td> <td>전(과수포함)</td> <td>가축(두/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정선군내 거주기간</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 현재 ( 년, 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 주택보유</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자가( ), 전세( ), 월세( )</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⑤ 가족사항</td> <td>관 계</td> <td>성 명</td> <td>연 령</td> <td>비 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⑥ 배우자 인적사항</td> <td>국적</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style="padding: 10px;"> <p>「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 신청자 :</p> <p>붙임 :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서 1부</p> <p>정선군수 귀하</p> </td> </tr> <tr> <td colspan="5" style="padding: 5px;"> <p>읍.면에서의 검토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 담 당 공 무 원 )</td> <td style="width:35%;">검토내용 및 일자기재</td> <td style="width:30%;">직.성명 : (서명)</td> <td colspan="2"></td> </tr> <tr> <td>( 음 주 천 의 장 )</td> <td></td> <td>○○○ 읍.면장 (서명)</td> <td colspan="2"></td> </tr> </table> </td> </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주1) ⑦ 담당공무원 관은 관련공부 확인 및 거주사실 결과 기재</p>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①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직업		② 재산규모	건 물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	㎡	㎡		③ 정선군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 년, 월)				④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⑤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⑥ 배우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p>「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 신청자 :</p> <p>붙임 :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서 1부</p> <p>정선군수 귀하</p>					<p>읍.면에서의 검토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 담 당 공 무 원 )</td> <td style="width:35%;">검토내용 및 일자기재</td> <td style="width:30%;">직.성명 : (서명)</td> <td colspan="2"></td> </tr> <tr> <td>( 음 주 천 의 장 )</td> <td></td> <td>○○○ 읍.면장 (서명)</td> <td colspan="2"></td> </tr> </table>					( 담 당 공 무 원 )	검토내용 및 일자기재	직.성명 : (서명)			( 음 주 천 의 장 )		○○○ 읍.면장 (서명)			<p>(별지 제1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th> </tr> <tr> <td rowspan="3" style="width:5%; text-align: center;">① 신청자 인적사항</td> <td style="width:15%;">주 소</td> <td colspan="3"></td> </tr> <tr> <td>등록기준지</td> <td colspan="3"></td> </tr> <tr> <td>성 명</td> <td style="width:15%;">생년월일</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연 락 처</td> <td>자 택: 휴대폰:</td> <td style="width:15%;">직업</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② 재산규모</td> <td>건 물</td> <td>답</td> <td>전(과수포함)</td> <td>가축(두/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정선군내 거주기간</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 현재 ( 년, 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 주택보유</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자가( ), 전세( ), 월세( )</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⑤ 가족사항</td> <td>관 계</td> <td>성 명</td> <td>연 령</td> <td>비 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⑥ 배우자 인적사항</td> <td>국적</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style="padding: 10px;"> <p>「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 신청자 :</p> <p>붙임 :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서 1부</p> <p>정선군수 귀하</p> </td> </tr> <tr> <td colspan="5" style="padding: 5px;"> <p>읍.면에서의 검토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 담 당 공 무 원 )</td> <td style="width:35%;">검토내용 및 일자기재</td> <td style="width:30%;">직.성명 : (서명)</td> <td colspan="2"></td> </tr> <tr> <td>( 음 주 천 의 장 )</td> <td></td> <td>○○○ 읍.면장 (서명)</td> <td colspan="2"></td> </tr> </table> </td> </tr> <tr> <td colspan="5" style="padding: 5px;"> <p style="font-size: x-small; 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p> <p style="font-size: x-small;">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td> </tr> </table>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①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직업		② 재산규모	건 물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	㎡	㎡		③ 정선군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 년, 월)				④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⑤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⑥ 배우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p>「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 신청자 :</p> <p>붙임 :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서 1부</p> <p>정선군수 귀하</p>					<p>읍.면에서의 검토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 담 당 공 무 원 )</td> <td style="width:35%;">검토내용 및 일자기재</td> <td style="width:30%;">직.성명 : (서명)</td> <td colspan="2"></td> </tr> <tr> <td>( 음 주 천 의 장 )</td> <td></td> <td>○○○ 읍.면장 (서명)</td> <td colspan="2"></td> </tr> </table>					( 담 당 공 무 원 )	검토내용 및 일자기재	직.성명 : (서명)			( 음 주 천 의 장 )		○○○ 읍.면장 (서명)			<p style="font-size: x-small; 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p> <p style="font-size: x-small;">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①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직업																																																																																																																																																																			
② 재산규모	건 물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	㎡	㎡																																																																																																																																																																			
③ 정선군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 년, 월)																																																																																																																																																																					
④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⑤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⑥ 배우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p>「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 신청자 :</p> <p>붙임 :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서 1부</p> <p>정선군수 귀하</p>																																																																																																																																																																						
<p>읍.면에서의 검토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 담 당 공 무 원 )</td> <td style="width:35%;">검토내용 및 일자기재</td> <td style="width:30%;">직.성명 : (서명)</td> <td colspan="2"></td> </tr> <tr> <td>( 음 주 천 의 장 )</td> <td></td> <td>○○○ 읍.면장 (서명)</td> <td colspan="2"></td> </tr> </table>					( 담 당 공 무 원 )	검토내용 및 일자기재	직.성명 : (서명)			( 음 주 천 의 장 )		○○○ 읍.면장 (서명)																																																																																																																																																										
( 담 당 공 무 원 )	검토내용 및 일자기재	직.성명 : (서명)																																																																																																																																																																				
( 음 주 천 의 장 )		○○○ 읍.면장 (서명)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①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직업																																																																																																																																																																			
② 재산규모	건 물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	㎡	㎡																																																																																																																																																																			
③ 정선군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 년, 월)																																																																																																																																																																					
④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⑤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⑥ 배우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p>「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 신청자 :</p> <p>붙임 :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서 1부</p> <p>정선군수 귀하</p>																																																																																																																																																																						
<p>읍.면에서의 검토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 담 당 공 무 원 )</td> <td style="width:35%;">검토내용 및 일자기재</td> <td style="width:30%;">직.성명 : (서명)</td> <td colspan="2"></td> </tr> <tr> <td>( 음 주 천 의 장 )</td> <td></td> <td>○○○ 읍.면장 (서명)</td> <td colspan="2"></td> </tr> </table>					( 담 당 공 무 원 )	검토내용 및 일자기재	직.성명 : (서명)			( 음 주 천 의 장 )		○○○ 읍.면장 (서명)																																																																																																																																																										
( 담 당 공 무 원 )	검토내용 및 일자기재	직.성명 : (서명)																																																																																																																																																																				
( 음 주 천 의 장 )		○○○ 읍.면장 (서명)																																																																																																																																																																				
<p style="font-size: x-small; 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p> <p style="font-size: x-small;">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제13조(「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간사) 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u>산림재해업무</u>를 관장하는 담당(주사)이 된</p>	<p>제12조(간사) ① ----- ----- ----- <u>산림재해업무와 관련</u> 된 <u>군 소속 공무원</u> 중에서 <u>군수</u></p>

다. ②·③ (생략)	가 임명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

## 제14조(「정선군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1조(이용료의 반환) <u>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u>	제21조(이용료의 반환) <삭제>

## 제15조(「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u>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u>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u>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1. <u>과오납한 경우</u> 2. <u>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u> 3. <u>제4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u>

	<p><u>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u></p>
--	----------------------------------

정선군 공고 제2019-120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정 선 군 수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안 제1조~제3조)
- 나. 상위법령 위반 조문에 대한 일괄 정비(안 제5조 ~ 제15조)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실)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luissong8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제1장 한자어 정비에 따른 개정

제1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장부의 기장)”을“(장부의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40조의 제목“(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을“(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4항 중 “기장한다”를 각각 “기록한다”로 한다.

제44조의 제목“(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을“(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장한다”를 “기록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장”을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을“(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장한다”를 “기록한다”로 한다.

제49조제5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장”을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87조 중 “기장·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88조 중 “기장·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기장·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2조(「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호 중 “깍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84조제4호 중 “깍연행위”를 “흡연행위”로 한다.

## 제2장 상위법령 위반에 따른 개정

제3조(「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과태료 처분 통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정선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군수는”을 “군수는 제2조 규정에 의한”으로,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기 전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징수에”를 “부과·징수에”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로 한다.

제5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 ----- ----- ----- 기록-----.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 기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 ----- ----- 회계처리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	②----- ----- -----.

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 (생략)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 ①지출 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 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

-----  
-----  
----- 기록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기록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①-----  
----- 기록한다.

②-----  
-----  
----- 기록-----.

③-----  
-----  
----- 기록-----.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

출절차 및 기장) ①·② (생략)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부를 기장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 ④ (생략)

⑤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 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절차) ① (생략)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 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장 · 정리한다.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출절차 및 기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기록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기록 -----.

제5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기록 -----.

③-----  
-----  
-----  
----- 기록 -----  
-----.

제87조(입고절차) -----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분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장·관리 하여야 한다.

-----  
-----  
-----  
----- 기록·관리 -----  
-----.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 45호 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 대장에 기장·관리 하여야 한다.

제88조(출고절차) -----  
-----  
-----  
----- 기록·관리 -----  
-----.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생략)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 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기록·관리 -----  
-----.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장 관리한다.  
② (생략)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  
-----  
-----  
-----  
기록 -----.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78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 3. (생략)</p> <p>4. 음식물의 섭취와 <u>끼연</u></p> <p>5. (생략)</p>	<p>제78조(회의의 질서유지)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흡연</u></p> <p>5. (현행과 같음)</p>
<p>제8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음식물의 섭취나 <u>끼연행위</u></p> <p>5. ~ 9. (생략)</p>	<p>제8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흡연행위</u></p> <p>5. ~ 9. (현행과 같음)</p>

제3조(「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례</u> <u>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lt;삭 제&gt;</p>
<p><u>제8조(의견청취 등)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u></p>	<p>&lt;삭 제&gt;</p>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삭 제>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와 납부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독촉장(별지 제14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

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하거 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  
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  
보)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  
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  
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  
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  
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7호서  
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 기 되었음을 통보하  
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  
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와 법원에 통보 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11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

<삭 제>

<삭 제>

<p><u>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u></p> <p><u>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수납부(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한다</u></p>	<p>&lt;삭 제&gt;</p>
-------------------------------------------------------------------------------------------------------------------------------------	--------------------

제4조(「정선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u>제19조(의견청취 등)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제19조(사전통지 등)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하기 전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u></p>

제5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u>인감증명서를</u> 첨부하여 개인</p>	<p>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 ----- ----- ----- <u>인감증명서</u>,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p>

<p>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p>	<p><u>인서명확인서 등을</u> ----- ----- -----.</p> <p>② (현행과 같음)</p>
------------------------------------------------------------------------------	----------------------------------------------------------------------